

**‘제11차 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(ICT 규제 샌드박스)’  
임시허가·실증특례 승인 공고**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0조 제6항 및 제42조의4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.

2020년 9월 17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

**임시허가증**

임시허가번호	2020-8호	임시허가 연월일	2020년 9월 16일
신청인	회사명(성명)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220-81-39938
	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		
	대표자 하현희		
임시허가 대상 기술·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	명칭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		
	주요내용 ①간편 본인인증 앱(PASS)과 ②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한 본인확인을 통해 휴대전화(LG유플러스)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		
유효기간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		
임시허가조건	○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(’20.12.10.)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책임 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조건으로, 간편 본인인증 앱(PASS)과 계좌인증 기술을 활용 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부여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.

2020년 9월 16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## 임시허가증

임시허가번호	2020-9호	임시허가 연월일	2020년 9월 16일
신청인	회사명(성명) 주식회사 카카오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120-81-47521	
	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, 1층(영평동)		
	대표자 여민수, 조수용		
임시허가 대상 기술·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	명칭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		
	주요내용 자동차운전면허증(플라스틱 카드 형태)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'으로 사용할 수 있는 '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' 제공 *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		
유효기간	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		
임시허가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·카카오뱅크의 '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'를 통해 신청·등록한 '모바일 운전면허증'에 대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'을 가지도록 2년간 임시허가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</li> </ul> </li> <li>(조건) 붙임의 '부가조건'을 준수할 것</li> </ul>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.

2020년 9월 16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## 붙임 부가 조건

### <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>

- 운전면허증의 개인정보, 단말에서 생성되는 개인키 등 개인정보는 이용자 소유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암호화하여 저장
- 카카오 서버에는 공개키, 면허정보의 해시값, 면허효력 수정시간 등만 저장
- 네트워크 통신구간 암호화
-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API 활용(세부 시스템 구성·설계는 경찰청·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결정)

### <위변조 방지 관련>

- 이용자는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운전면허증 명의자와 이용자 간 동일한 확인 후 본인 소유 스마트폰(1대)에만 모바일 면허증 등록(1인 1단말'(회선))
  - \* 동일인이 타회선에 등록 시도시 기 등록된 사실을 공지하여 중복 발급 차단, 이는 타 플랫폼에 연계된 면허증과도 연계하여 차단되어야 함
  - ※ 스크린 캡처 방지 보안 기능 추가, QR코드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유효성 체크시 사용할 암호키 정보 보관하여 타 단말기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구현
- 모바일 단말에 저장된 운전 면허증의 검증을 위해 모바일 단말의 정보와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생성하고, 서버에서 전자서명 검증을 함으로써 위·변조 여부를 확인
- 경찰청과 직접 연동하여 원스톱 신고·접수할 수 있는 체계 마련
- 위·변조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
-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때와 등록된 면허증을 사용할 때 타인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것

### <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방지 관련>

- 경찰청·도로교통공단과 연계방법', 안전성 보장 방안" 등 구축 논의 중인 서비스 통합망에 참여하는 등 충분한 협의 후 사업 개시
  - \* 연계 시기, 시스템 구성 및 설계 방안 등
  - \*\* 단말기, 서버, 네트워크 등 보안 적용 방안 등

**<기타 이용자 보호 방안>**

- 개인정보 취급방침, 이용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토록 체계 구축
- 이용자 불만 접수·처리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
- 이용자보호에 필요한 관련 책임보험 등 가입

**<서비스 이용자 전자고지 사업연계>**

-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적성검사 기간, 교통안전교육 등 안내 알림서비스 실시, 국민 편의기능 마련

**<既 실시허가 취득 개발업체와 사용·검증방법 등 협의 >**

- 업체별로 사용·검증방법이 달라 국민이 사용처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맞게 각각 다른 면허증을 구비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없도록 범용성 담보를 위한 경찰청·도로교통공단·既 취득 업체와 방안 협의 필요

- 또한,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CI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**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안\***은 신청기업이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

\* (방통위 검토의견) 이용자가 동의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CI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 가능

**임시허가증**

임시허가번호	2020-9호	임시허가 연월일	2020년 9월 16일
신청인	회사명(성명) 주식회사 카카오뱅크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375-88-00197
	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, 에이치스퀘어 에스동 5층		
	대표자 윤호영		
임시허가 대상 기술·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	명칭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		
	주요내용 자동차운전면허증(플라스틱 카드 형태)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'으로 사용할 수 있는 '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' 제공 *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		
유효기간	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		
임시허가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·카카오뱅크의 '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'를 통해 신청·등록한 '모바일 운전면허증'에 대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'을 가지도록 2년간 임시허가 부여</li> <li>*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</li> <li>○ (조건) 불임의 '부가조건'을 준수할 것</li> </ul>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.

2020년 9월 16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## 붙임 부가 조건

### <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>

- 운전면허증의 개인정보, 단말에서 생성되는 개인키 등 개인정보는 이용자 소유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암호화하여 저장
- 카카오 서버에는 공개키, 면허정보의 해시값, 면허효력 수정시간 등만 저장
- 네트워크 통신구간 암호화
-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API 활용(세부 시스템 구성·설계는 경찰청·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결정)

### <위변조 방지 관련>

- 이용자는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운전면허증 명의자와 이용자 간 동일인 확인 후 본인 소유 스마트폰(1대)에만 모바일 면허증 등록(1인 1단말\*(회선))
  - \* 동일인이 타회선에 등록 시도시 기 등록된 사실을 공지하여 중복 발급 차단, 이는 타 플랫폼에 연계된 면허증과도 연계하여 차단되어야 함
  - ※ 스크린 캡처 방지 보안 기능 추가, QR코드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유효성 체크시 사용할 암호키 정보 보관하여 타 단말기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구현
- 모바일 단말에 저장된 운전 면허증의 검증을 위해 모바일 단말의 정보와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생성하고, 서버에서 전자서명 검증을 함으로써 위·변조 여부를 확인
- 경찰청과 직접 연동하여 원스톱 신고·접수할 수 있는 체계 마련
- 위·변조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
-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때와 등록된 면허증을 사용할 때 타인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것

### <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방지 관련>

- 경찰청·도로교통공단과 연계방법\*, 안전성 보장 방안\*\* 등 구축 논의 중인 서비스 통합망에 참여하는 등 충분한 협의 후 사업 개시
- \* 연계 시기, 시스템 구성 및 설계 방안 등
- \*\* 단말기, 서버, 네트워크 등 보안 적용 방안 등

### <기타 이용자 보호 방안>

- 개인정보 취급방침, 이용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토록 체계 구축
- 이용자 불만 접수·처리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
- 이용자보호에 필요한 관련 책임보험 등 가입

### <서비스 이용자 전자고지 사업연계>

-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적성검사 기간, 교통안전교육 등 안내 알림서비스 실시, 국민 편의기능 마련

### <既 실시허가 취득 개발업체와 사용·검증방법 등 협의 >

- 업체별로 사용·검증방법이 달라 국민이 사용처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맞게 각각 다른 면허증을 구비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없도록 범용성 담보를 위한 경찰청·도로교통공단·既 취득 업체와 방안 협의 필요

- 또한,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CI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**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안\***은 신청기업이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

- \* (방통위 검토의견) 이용자가 동의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CI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 가능

## 임시허가증

임시허가번호	2020-10호	임시허가 연월일	2020년 9월 16일
신청인	회사명(성명) 네이버 주식회사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220-81-62517	
	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그린팩토리		
	대표자 한성숙		
임시허가 대상 기술·서비스 명칭 및 주요 내용	명칭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		
	주요내용 자동차운전면허증(플라스틱 카드 형태)을 발급받은 사람이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'으로 사용할 수 있는 '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' 제공 *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		
유효기간	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		
임시허가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네이버의 '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'를 통해 신청·등록한 '모바일 운전면허증'에 대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'을 가지도록 2년간 임시허가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</li> </ul> </li> <li>○ (조건) 붙임의 '부가조건'을 준수할 것</li> </ul>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.

2020년 9월 16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## 붙임 부가 조건

### <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>

- 운전면허증의 개인정보, 단말에서 생성되는 개인키 등 개인정보는 이용자 소유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암호화하여 저장
- 네이버 서버에는 공개키, 면허정보의 해시값, 면허효력 수정시간 등만 저장
- 네트워크 통신구간 암호화
-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API 활용(세부 시스템 구성·설계는 경찰청·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결정)

### <위변조 방지 관련>

- 이용자는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운전면허증 명의자와 이용자 간 동일한 확인 후 본인 소유 스마트폰(1대)에만 모바일 면허증 등록(1인 1단말'(회선))
  - \* 동일인이 타회선에 등록 시도시 기 등록된 사실을 공지하여 중복 발급 차단, 이는 타 플랫폼에 연계된 면허증과도 연계하여 차단되어야 함
  - ※ 스크린 캡처 방지 보안 기능 추가, QR코드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유효성 체크시 사용할 암호키 정보 보관하여 타 단말기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구현
- 모바일 단말에 저장된 운전 면허증의 검증을 위해 모바일 단말의 정보와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생성하고, 서버에서 전자서명 검증을 함으로써 위·변조 여부를 확인
- 경찰청과 직접 연동하여 원스톱 신고·접수할 수 있는 체계 마련
- 위·변조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
-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할 때와 등록된 면허증을 사용할 때 타인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것

### <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방지 관련>

- 경찰청·도로교통공단과 연계방법', 안전성 보장 방안'' 등 구축 논의 중인 서비스 통합망에 참여하는 등 충분한 협의 후 사업 개시
  - \* 연계 시기, 시스템 구성 및 설계 방안 등
  - \*\* 단말기, 서버, 네트워크 등 보안 적용 방안 등

**<기타 이용자 보호 방안>**

- 개인정보 취급방침, 이용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토록 체계 구축
- 이용자 불만 접수·처리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
- 이용자보호에 필요한 관련 책임보험 등 가입

**<서비스 이용자 전자고지 사업연계>**

-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적성검사 기간, 교통안전교육 등 안내 알림서비스 실시, 국민 편의기능 마련

**<既 실시허가 취득 개발업체와 사용·검증방법 등 협의 >**

- 업체별로 사용·검증방법이 달라 국민이 사용처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맞게 각각 다른 면허증을 구비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없도록 범용성 담보를 위한 경찰청·도로교통공단·既 취득 업체와 방안 협의 필요

- 또한,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CI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안\*은 신청기업이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

\* (방통위 검토의견) 이용자가 동의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CI를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목적으로 활용 가능

**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(지정조건 변경 승인)**

지정번호	2019-18-01호	지정연월일 (지정조건 변경일)	2019년 11월 28일(2020년 9월 16일)	
신청인	회사명(성명) 현대자동차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101-81-09147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2			
	대표자 이원희			
	명칭 및 주요내용 (명칭)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(플랫폼 개발 및 운영) (주요내용) 대형승합택시를 활용하여, 대도시내 반경 2km 내외를 서비스 지역으로 한정하여 다수의 승객에게 실시간 차량 배정 및 최적화된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			
지정 대상 기술·서비스				
유효기간	○ 2020.2.14 ~ 2022.2.13		※ 유효기간은 변동없이 기존과 동일	
지정 조건 (변경 사항)	○ 출근시간대에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07~24시에서 06시~24시로 확대			
	○ 세종시는 1생활권(정부세종청사 위치)과 2생활권(중심상업지구 위치) 간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거리를 특정 지역 반경 2km 내외에서 4km 내외로 확대			
	구분	변경 전 지정조건	변경 후 지정조건	비고
	거리	특정지역 반경 2km 내외	특정지역 반경 4km 내외	세종시만 해당
시간	07시-24시(17시간)	06시-24시(18시간)	전 지역 모두	
※ 변경 사항 이외의 특례내용, 실증범위, 부가조건은 기존과 동일		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2020년 9월 16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##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(지정조건 변경 승인)

지정번호	2019-19-01호	지정연월일 (지정조건 변경일)	2019년 11월 28일(2020년 9월 16일)	
신청인	회사명(성명) KST모빌리티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643-88-00799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, 서울시티타워 13층			
	대표자 이행열			
	이행열			
지정 대상 기술·서비스	명칭 및 주요내용 (명칭)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(플랫폼 차량 서비스 운영) (주요내용) 대형승합택시를 활용하여, 대도시내 반경 2km 내외를 서비스 지역으로 한정하여 다수의 승객에게 실시간 차량 배정 및 최적화된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			
유효기간	○ 2020.2.14 ~ 2022.2.13 ※ 유효기간은 변동없이 기존과 동일			
지정 조건 (변경 사항)	○ 출근시간대에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07~24시에서 06시~24시로 확대			
	○ 세종시는 1생활권(정부세종청사 위치)과 2생활권(중심상업지구 위치) 간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거리를 특정 지역 반경 2km 내외에서 4km 내외로 확대			
	구분	변경 전 지정조건	변경 후 지정조건	비고
거리	특정지역 반경 2km 내외	특정지역 반경 4km 내외	세종시만 해당	
시간	07시-24시(17시간)	06시-24시(18시간)	전 지역 모두	
※ 변경 사항 이외의 특례내용, 실증범위, 부가조건은 기존과 동일		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2020년 9월 16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##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

지정번호	2020-14호	지정연월일	2020년 9월 16일
신청인	회사명(성명) 주식회사 키친엑스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110111-7179587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4, 5층		
	대표자 이승환		
	이승환		
지정 대상 기술·서비스	명칭 및 주요내용 (명칭)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(주요내용)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·공유하는 서비스(공유주방)		
유효기간	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		
지정 조건	○ (특례내용) 키친엑스의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신고(공유주방)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		
	○ (실증범위) '키친엑스 신촌 지점'에 한정하되,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 협의 하에 '키친엑스 신촌 지점'과 동일한 특례 적용 가능 ※ 추가지점을 설립하더라도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의 범위로 한정		
○ (조건) 키친엑스는 다음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			
< 부가 조건 >			
① '위생관리책임자'를 지정하여 매일 주방 시설 및 식재료 위생관리 상태 점검 및 기록관리 - 공유주방 운영자는 「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」 준수			
② 주방이용자는 동 시간 대 최대 5팀(10명)으로 제한 * 다만, 실증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주방 이용자 수를 식약처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			
③ 각 영업자별 식재료 보관공간을 구분 제공하고, 개별 식재료에는 모두 사업자(소유자) 식별표시 부착	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2020년 9월 16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